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감사원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제1장 개 요

1. 세입·세출 결산	1
가. 세입 결산	1
나. 세출 결산	2
2. 재무제표	5
가. 재정상태표	5
나. 재정운영표	7
다. 순자산변동표	9

제2장 검토의견

1.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등	10
가. 개요	10
나.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11
다. 업무용택시비 예산 증액 전용의 적절성	14
라.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 업무용택시비는 감사활동경비로 편성할 필요	16
2.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일치 해소 필요	19
가. 개요	19
나.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일치 해소 필요	21

3. 감사활동경비 -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23
가. 개요	23
나. 감사활동경비 -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24
4. 감사활동경비 :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28
가. 개요	28
나. 감사청구의 감사실시 결정 기간 및 감사종료 기간 단축 방안 등 마련 필요	33
5. 적극행정지원 :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37
가. 개요	37
나.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37
6.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및 감사 인력풀제 시설 개선공사 관련	41
가. 개요	41
나.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42
(1)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43
(2) 과도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	45
(3)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47
다. 감사 인력풀제 시설 개선공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	48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53
가. 개요	53
나.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 전액 불용처리: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54

8. 국제교류협력강화 : 사업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등	57
가. 개요	57
나. 사업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58
다.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필요	64
9.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68
가. 개요	68
나.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69

※ 참고자료

1.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5
2. 2021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2
3.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2
4. 2019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5
5. 201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21

제1장 개 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2023 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천 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639,000	731,025	730,748	114.4%	100.0%	-	277

* 납기미도래로 미수납되었으나 2024년 1월 징수 완료

- 2023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7억 3,07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 3,900만원 대비 114.4%이며, 징수결정액 7억 3,103만원을 전액 수납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경상이전수입이 1억 4,000만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

나. 세출 결산

〈2023 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천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용 증·감(△)액				
137,381,000	1,567,965	-	1,246,211 △1,246,211	138,948,965	132,761,730 (95.6%)	1,168,254 (0.8%)	5,018,980 (3.6%)

○ 예산액 1,373억 8,1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5억 6,797만원,
예산현액은 1,389억 4,897만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1,327억 6,173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1억 6,825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인 50억 1,898만원임.

○ 지출액 1,327억 6,173만원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927억 1,480만원(69.8%)
물건비로	344억 3,526만원(25.9%)
이전지출로	10억 1,660만원(0.8%)
자산취득으로	45억 9,507만원(3.5%)이

각각 지출되었는바, 인건비와 물건비가 1,271억 5,006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95.8%를 차지함.

○ 이월액은 11억 6,825만원으로

- 과장급 직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및 운영 등 계약기간
미도래로 물건비 2억 3,872만원 이월
- 감사교육원 남녀공동육실 환경개선공사, 제1별관 스피드 게이트
설치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로 자산취득 9억 2,954만원 이월

○ 불용액은 50억 1,898만원으로

- 정·현원 차이 등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36억 9,700만원이,
예산의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물건비 등 13억 2,198만원이
각각 불용됨.

- 전용액 12억 4,621만원의 주요내역을 보면,
 - ‘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 수요에 대해 일반연구비가 아닌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 (단위사업)감사활동경비의 (세목)일반연구비에서 1억 5,000만원을
 - (단위사업)감사연구활동경비의 (세목)정책연구비로 전용
 - 국별 통합 사무공간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격이 맞지 않고 노후화된 기존 가구를 교체하기 위한 별도의 자산취득비가 미편성되어
 - (단위사업)청사및시설물관리의 (목)공사비에서 4억 3,000만원을
 - (단위사업)청사및시설물관리의 (목)자산취득비로 전용
 - 제1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으로 외부 사무실 임차기간이 연장되어
 - (단위사업)청사및시설물관리의 (목)공사비에서 2억 8,900만원을
 - (단위사업)청사및시설물관리의 (목)자산취득비로 전용
 - 코로나19 종식 이후 위탁교육기관에서 국외연수과정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국외교육여비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 (단위사업)기본경비의 (세목)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을
 - (단위사업)기본경의 (세목)국외교육여비로 전용

2.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2023년도 재정상태표〉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C)	233,285,404	225,439,386	7,846,018	3.5 %
부 채(D)	1,573,349	1,399,000	174,349	12.5 %
순자산(C-D)	231,712,055	224,040,386	7,671,669	3.4 %

○ 2023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은 2,332억 8,5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4,602만원(3.5%) 증가하고, 부채총액은 15억 7,33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35만원(12.5%) 증가함.

○ 각 계정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유동자산은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선급 임차료 6,35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선급금 등 16억 2,802만원이 증가하여 계 16억 6,692만원 증가
- 일반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등으로 15억 5,731만원 감소하였으나, 1별관 재건축 등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이 72억 682만원이 증가하는 등 72억 7,727만원 증가하여 계 57억 1,996만원 증가

- 무형자산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0억 1,070만원이 증가하는 등 37억 5,324만원 증가
- 기타비유동자산은 지방관사 및 청사 임차보증금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3,973만원 증가
- 부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79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1억 7,459만원 증가

나. 재정운영표

〈2023년도 재정운영표〉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146,693,232	144,953,797	1,739,435	1.2 %
II. 관리운영비	0	0	0	-
III. 비배분비용	4,712	8,615	-3,903	△-45.3 %
IV. 비배분수익	229,317	118,443	110,874	△93.6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46,468,627	144,843,968	1,624,659	1.1 %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46,468,627	144,843,968	1,624,659	1.1 %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순원가¹⁾는 1,464억 6,8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466만원(1.1%)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1,466억 9,3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3,944만원 증가한 바,

1) 재정운영 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비용 - 수익) + 비배분원가(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비용은 인건비 13억 8,758만원, 여비교통비 15억 1,382만원 등 54억 158만원이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 1억 7,454만원, 인쇄비 1억 2,099만원 등 36억 4,112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7억 6,046만원 증가
- 수익은 감사교육원의 교육비 및 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2,102만원 증가
- 비배분비용은 1별관 공사 관련 조달수수료 등 39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억 5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 1,087만원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표

〈2023년도 순자산변동표〉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224,040,385	218,812,512	5,227,873	2.4 %
II. 재정운영결과	146,468,627	144,843,968	1,624,659	1.1 %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54,184,241	150,118,022	4,066,219	2.7 %
IV. 조정항목	△43,945	△46,180	2,236	△4.8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31,712,055	224,040,375	7,671,680	3.4 %

○ 2023회계연도말 순자산총액은 2,317억 1,2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억 7,167만원(2.4%) 증가함.

- 이는 기초순자산총액 2,240억 4,039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 1,464억 6,863만원을 차감하고,

-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327억 6,173만원, 공무원연금 등 국가부담액 221억 4,647만원 등 1,549억 1,499만원을 조달하고, 국고이전지출(세입결산액) 7억 3,075만원을 이전한 계 1,541억 8,424만원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가산하며,

- 조정항목으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중 당기 감가상각 환입으로 4,394만원 감소를 반영한 결과임.

제2장 검토의견

1.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등

가. 개요

□ ‘기본경비(1111-251)’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및 감사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일반수용비 18억 7,2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업무용택시비 명목으로 편성하였고,

○ 업무용택시비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으로,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예산 4억 5,000만원, 이·전용 등 1억 1,000만원

<기본경비 중 업무용택시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본경비	13,450	13,450	-	430 △308	13,572	13,209	-	363
· 일반수용비 (210-01)	1,872	1,872	-	150 △63	1,958	1,956	-	3
업무용택시비	450	450	-	110	560	567	-	-

* 자료 : 감사원

나.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500%가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음.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감사원은 업무용택시비 증액은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기본경비 중 업무용택시비 편성 목적>

2021년 이전		2022년 이후	
원내 근무 직원의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	9,000만원 이하	원내 근무 직원의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	9,000만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위한 소요	36,000만원

- 연도별 업무용택시비의 예산과 집행 실적을 보면 2018년 ~ 2020년의 예산액은 6,300 ~ 6,800만원 수준이었고, 2018년 및 2019년도 집행율은 80~90% 정도였으나,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9,800만원으로 집행율이 155%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후 2021년도는 전년 대비 42.8%인 2,7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율은 107.5%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5배가 증가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에는 2022년도와 동일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전용 등으로 충당한 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126%임.

<최근 5년간 업무용택시비 집행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
예산액(A)	6,800	6,600	6,300	9,000	45,000	45,000
집행액(B)	5,630	6,282	9,821	9,675	40,600	56,700
집행률(B/A)	82.8	95.2	155.9	107.5	90.3	126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의 업무용택시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2022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감사원은 업무용 택시비를 주로 원내 근무 직원의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해 왔고, 그에 따라 동 예산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본경비(1111-251)에 편성해 왔는데, 2022회계연도에 증액한 업무용택시 예산은 감사원이 압축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업무용 택시비 지출 목적과 달라 사실상 신규 편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는 증액한 업무용택시 예산은 그 동안의 업무용택시비 집행 목적과 다르게 편성된 것임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집행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 목적에 맞추어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의 소요에 집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러나 감사원은 업무용택시 사용 내역에 대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선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며 2023년 업무용택시비 예산 중 심야시간 귀가 지원 등에 2억 8,300만원, 감사활동에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각각의 총액을 제출하였으나 증액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다. 업무용택시비 예산 증액 전용의 적절성

- 2023년도 감사원이 집행한 택시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택시비로 편성한 예산 4억 5,0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는데 초과집행 사유는 야근 업무 증가 및 택시요금 인상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감사 활동경비 내 국내여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전용하였음.

<업무용택시비를 위한 감사활동경비-국내여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13.)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110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야근 업무 증가 및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업무용택시 예산이 부족

* 자료 : 감사원

- 전용한 예산 1억 1,000만원은 2023년도 전체 업무용택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전용 시점이 11월 13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50일 간에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현지출장 및 초과근무 증가 등으로 업무택시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²⁾은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원내 직원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 소요에 따른 예산집행액이 6,200만원 수준이고, 소요가 증가한 2021년도 집행 수준도 9,7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억 1,000만 원을 증액 전용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라.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 업무용택시비는 감사활동경비로
편성할 필요

- 현행 업무용택시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경상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원내 직원 심야시간 택시 이용과 감사활동을 위한 현지출장 시 현장조사 등을 위한 택시 이용 비용인바 목적이 서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2022년도 업무용택시비 3억 6,000만원 증액은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 소요를 반영한 것임.
- 감사원은 예산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본경비(1111-251)에 편성하고, 감사활동에 전속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감사활동경비로 구분하는 등 (1131-303) 별도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집행하여야 하므로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경우 기본경비와는 구분된 감사활동 경비(1131-303)에 편성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3년도 기본경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 사업 명	2023 예산액
	본예산
· 기본경비(1111-251)	13,450
- 상용임금(110-03)	3,759
- 일용임금(110-04)	83
- 일반수용비(210-01)	1,87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93
- 피복비(210-03)	29
- 급식비(210-04)	15
- 특근매식비(210-05)	261
- 일·숙직비(210-06)	49
- 임차료(210-07)	1,262
- 유튜브비(210-08)	34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43
- 재료비(210-011)	17
- 복리후생비(210-012)	1,097
- 일반용역비(210-014)	14
- 관리용역비(210-015)	77
- 기타운영비(210-016)	496
- 국내여비(220-01)	184
- 국외교육여비(220-03)	3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12
- 직책수행경비(250-02)	1,239
- 특정업무경비(250-03)	41
- 일반연구비(260-01)	71
- 포상금(310-03)	104
- 고용부담금(320-09)	508
- 자산취득비(430-01)	149
합 계	13,450

* 자료 : 감사원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 사업 명	2023 예산액
	본예산
· 감사활동경비(1131-303)	17,078
- 일반수용비(210-01)	1,75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 국내여비(220-01)	5,816
- 국외업무여비(220-02)	492
- 국외교육여비(220-03)	60
- 특수활동비(230-00)	1,51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04
- 특정업무경비(250-03)	4,616
- 일반연구비(260-01)	1,900
- 포상금(310-03)	268
- 자산취득비(430-01)	20
합 계	17,078

□ 현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경비와 감사활동경비는 단위 사업을 구분하여 그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에는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예산이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³⁾되어 있는바, 이는 현장출장 소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임.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는 현장출장 감사반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것으로, 업무용택시비 중 현장출장 택시비와 그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감사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업무용택시비를 감사활동경비 단위사업(1131-303)의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내역	예산액
· 감사활동경비(1131-303)	17,078,000
일반수용비(210-01)	1,752,274
1. 감사백서 등 발간비	278,300
2. 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143,000
3. 자체감사활동 지원·개선 실무협의 등	90,000
4.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603,000
5.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350,574
6. 감사지원 정부청사연락사무소 운영비	43,200
7.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	149,400
8.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	94,800

* 자료 : 감사원

2.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일치 해소 필요

가. 개요

- ‘기본경비(1111-251)’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및 감사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

감사원은 기본경비 중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여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업무용택시비, 교육초빙강사료 등을 위하여 2023년도에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예산현액은 19억 5,800만원*으로, 1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예산 18억 7,200만원, 이·전용 등 8,700만원 (1억 5,000만원, △6,300만원 전용)

<기본경비-일반수용비(210-01) 편성 및 내역>

(단위 : 천원)

일반수용비 (210-01)	2023 예산액	2023 집행액
	1,871,663	1,955,444
1. 운영지원과(업무용택시 제외)	408,325	566,056
· 업무용택시	450,000	567,000
2. 인사혁신과	64,220	104,164
3. 대변인실	130,356	115,744
4. 감찰관실	2,500	2,500

일반수용비 (210-01)	2023 예산액	2023 집행액
	1,871,663	1,955,444
5. 심의실	42,820	56,707
6. 심사관리관실	5,000	5,000
7. 기획조정실	22,000	19,221
8. 디지털감사지원관	5,000	1,412
9.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82,250	87,644
10. 감사교육원	513,962	390,252
11. 감사연구원	12,000	11,996
12. 의무실 의약품비	18,600	19,813
12. 자체교육강사료	1,500	370
13. 직원 정신건강 관리	13,200	7,565

* 자료: 2023년도 각목명세서 재구성

□ 2023년도 기본경비(1111-251) 일반수용비 18억 7,200만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지원과와 감사교육원이 각각 8억 5,800만원, 5억 1,400만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억 8,200만원, 대변인실 1억 3,000만원 순임.

나.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일치 해소 필요

□ 2023년도 기본경비(1111-251) 일반수용비 중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액은 1억 8,200만원이나 집행은 8,800만원에 불과하였음.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밖의 연도는 집행율이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감사원은 각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 집행액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40%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기본경비-일반수용비(210-01) 중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예산액	125,000	114,000	135,000	182,250	182,250
	집행액	36,153	32,931	79,418	87,429	87,644
	집행잔액	88,847	81,069	55,582	94,821	94,606

* 자료: 감사원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1131-303) 일반수용비 중에 현장출장 감사반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해당 예산은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입, 대상기관 감사장 사용에 따른 차대비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감사활동경비(1131-303) 일반수용비로 필요한 수요를 이미 상당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기본경비(1111-251)에 편성되어 있는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기본경비(1111-251) 중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수요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과 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감사활동경비 -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가. 개요

□ ‘감사활동경비(1131-303)’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직무감찰 및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70억 7,800만원으로, 그 중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가 각각 58억 1,600만원, 4억 9,2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예산의 3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는 27%에 해당하는 46억 1,600만원, 일반연구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19억, 15억 1,900만원임.

○ 감사활동경비 예산현액은 167억 4,700만원*으로, 158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예산 170억 7,800만원, 이·전용 등 △5억 1,400만원, 이월(8,800만원, △1억 2,400만원)

<감사활동경비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 감사활동경비	17,078	17,078	88	95 △514	16,747	15,966	16,659	15,878	124	657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 국내여비 (220-01)	5,816	5,816	-	△ 258	5,558	5,332	5,558	5,332	-	226
· 국외업무여비 (220-02)	492	492	-	31 △ 93	430	428	430	428	-	2
· 국외교육여비 (220-03)	60	60	-	63	123	122	123	122	-	1

* 자료 : 감사원

나. 감사활동경비 -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 감사원은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1131-303) 중 여비 예산을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여비 2억 5,800만원을 각각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및 기본경비의 업무용택시비로 전용하였고, 국외업무여비 9,200만원을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교육)여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하였음.

□ 감사원은 2023년도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료 인상 등으로 추가 집행요인이 발생하여 “감사활동경비”의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의 국외업무여비로 60백만원 전용,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외출장 예산 부족으로 “감사활동경비” 국내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로 55백만원을 전용하였다는 설명임.

<최근 5년간 감사활동경비-국내여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9,003	-	-	-	9,003	8,918	-	85	99.1
2020	9,003	△1,600	-	-	7,403	5,356	-	2,047	72.3
2021	8,726	-	-	-	8,726	3,881	-	4,845	44.5
2022	6,981	△554	-	△300	6,127	4,252	-	1,875	69.4
2023	5,816		-	△258	5,558	5,332	-	226	95.9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의 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로 1억 4,700만원을 전용하였는바, 이는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 8억 2,2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음.

○ 특히, 감사원은 2023년도 당초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국외교육 여비⁴⁾에 100%를 초과하는 6,200만원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국내 여비(220-01)에서 세목조정하여 증액하였는바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식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4) <2022/2023 감사활동경비-국외교육여비(220-03)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세목조정)	예비비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42,000	42,000	-	27,585	-	69,585	70,261	-	
2023	60,000	60,000	-	62,962	-	122,962	121,589	-	

* 자료 : 감사원

감사원은 향후 이와 같은 방식의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활동경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전용 (6.9.)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업무여비 (220-02)	60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료 인상 등으로 예산보다 추가 집행요인 발생
	세목 조정 (8.28.)		국내여비 (220-01)	30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교육여비 (220-03)	캐나다 감사책임성재단 성과감사 교육인원의 확대에 교육훈련비 추가소 발생 및 환율상승 등 영향으로 국외교육여비 예산 부족
			국외 업무여비 (220-02)	32			
	전용 (10.18)		국내여비 (220-01)	55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코로나 이후 숙박비, 항공임 등 상승으로 인하여 상반기 감사출장 여비 추가 집행 발생. 이에 4분기에 예정된 국외출장 관련하여 소요 예상액이 잔여 예산을 초과하여 전용
	세목 조정 (10.19.)		국내여비 (220-01)	31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업무여비 (220-02)	ODA 감사 관련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
	전용 (11.13)		국내여비 (220-01)	110	기본경비 (1111-251)	일반수용비 (210-01)	야근 업무 증가 및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업무용 택시 예산 부족
	전용 (11.13)		국내여비 (220-01)	32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유엔공업개발기구 외부감사관 임후보와 관련하여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 예산 부족
2022	전용 (7.19.)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300	전산운영 경비 (1134-309)	일반연구비 (260-01)	ISP 수립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업체들의 참여 유도 및 추가 과업 수행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9.6.)		국외업무 여비 (220-02)	29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교육여비 (220-03)	감사책임성재단 단기훈련 과정 관련 교육과정 확대 등으로 예산 부족
전용 (1021.)		국외 업무여비 (220-02)	50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ICC 외부감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확보 필요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1031-303) 국내여비가 2019년 90억 3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2023년도 58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다른 세부사업 등의 국외여비 등으로 전용 등을 하여 집행하는 상황임을 볼 때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실제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여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5년간 감사활동경비-국내여비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9,003	-	-	9,003	8,918	85	99.1
2020	9,003	△ 1,600	-	7,403	5,356	2,047	72.3
2021	8,726	-	-	8,726	3,881	4,845	44.5
2022	6,981	△ 554	△ 300	6,127	4,252	1,875	69.4
2023	5,816		△ 258	5,558	5,332	226	95.9

* 자료 : 감사원

4. 감사활동경비 :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개요

□ ‘감사활동경비(1131-303)’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감사활동경비 예산현액은 167억 4,700만원*으로, 159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예산 170억 7,800만원, 전년도 이월(8,800만원) 및 이·전용 등(△4억 1,900만원)

<감사활동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 경비	17,078	17,078	88	△419	16,747	15,966	124	657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 예산은 그 규모 순으로 보면 여비(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외교육여비) 63억 6,700만원, 특정업무경비 46억 1,600만원, 일반연구비 19억, 일반수용비 17억 5,200만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 예산액
	본예산
○ 감사활동경비(1131-303)	17,078
· 일반수용비(210-01)	1,75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 국내여비(220-01)	5,816
· 국외업무여비(220-02)	492
· 국외교육여비(220-03)	60
· 특수활동비(230-00)	1,51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04
· 특정업무경비(250-03)	4,616
· 일반연구비(260-01)	1,900
· 포상금(310-03)	268
· 자산취득비(430-01)	20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 예산 중 국내여비의 세부배정 내역을 보면 국민제안 감사활동에 12억 1,100만원을 배정하고 있음.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국내여비(220-01)	5,815,595
1. 결산검사 활동	97,210
2. 성과감사 활동	1,476,785
3. 기관정기감사 활동	1,809,072
4. 특정사안감사활동	626,344
5. 국민제안감사활동	1,211,196
6. 민원 직접처리	337,360
8. 심사관리관실	42,515
9. 심의실	22,678
10. 기획조정실	26,816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중 국민제안감사와 관련된 예산은 12억 5,600만원이고, 그중 국내여비가 12억 1,100만원으로 97%에 해당하고, 그 외 국민감사청구위원회 회의경비 등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감사청구 관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역(비목)	2023년	
		예산액	집행액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감사청구 관련 위원회 회의경비(210-01)	18	25
	국민제안감사활동 국내여비(220-01)	1,211	478
	감사청구 관련 위원회 오찬경비(240-02)	3	-
	감사청구제기 우수자(310-03)	24	24
	계	1,256	527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감사원의 감사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실지감사 136건을 하였고, 그 중 국민제안감사는 61건임.

<2023년도 감사활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결산검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특정사안감사	국민제안감사
감사사항 수	136	3	35 (50개 기관)	17	20	61 ¹⁾

1) 감사착수 건수

* 자료 : 감사원

□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5)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의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청구 심사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감사청구 개요>

구 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근거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도입연도	· 2002년	· 1996년
청구인	·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	·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 국민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 감사대상기관의 장 · 지방의회 · 국무총리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기간	· 제한 없음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기관	· 감사원 * 국회·법원·선관위·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기관에 청구	· 감사원

* 자료 : 감사원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하게 된 국민제안감사를 살펴보면 2020년 및 2021년도 각각 39건, 32건에 비하여 2022년 및 2023년도에는 각각 73건, 6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감사청구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결산검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특정사안 감사	국민제안 감사
2019	감사사항 수 169	3 ¹⁾	37 (43개 기관)	16	113 ²⁾	
2020	감사사항 수 135	1	35 (50개 기관)	33	27	39
2021	감사사항 수 128	2	38 (74개 기관)	38	18	32
2022	감사사항 수 143	3	34 (82개 기관)	20	13	73
2023	감사사항 수 136	3	35 (50개 기관)	17	20	61 ³⁾

1) 2019년 당시 “재무감사”

2) 2019년까지는 국민제안감사가 특정감사에 포함되어 집계

3) 감사착수 건수 * 자료 : 감사원

나. 감사청구의 감사실시 결정 기간 및 감사종료 기간 단축 방안 등 마련 필요

□ 2023년도 접수된(이월 포함)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각각 34건, 217건으로 총 25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74건은 감사중이거나 감사실시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기각·각하 여부를, 공익감사청구는 부서장의 결재로 진행함.

< 2023년도 감사청구 처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접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 실시	감사 미실시			
			기각	각하	취하	
국민감사청구	34	4	18	3	1	8
공익감사청구	217	35	83	27	6*	66
계	251	39	101	30	7	74

* 이첩사항 1건 포함, * 자료 : 감사원

□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 기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6)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제1항7)에 따라 감사청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임.

구 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근거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처리기한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u>감사실시 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u> · <u>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u>	·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u>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결정하는 것이 원칙</u> · <u>실지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 종료</u>

* 자료 : 감사원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법정기한인 30일(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결정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감사청구 평균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간>

(단위 : 일)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감사청구	40.3	82.1	84.1	48.8	70.3
공익감사청구	66.9	66.9	69.0	55.6	63.7

* 자료 : 감사원

7)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 ①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완 기간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감사실시 결정비율이 평균적으로 30% 미만이고,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감사청구 186건(국민 24, 공익162) 중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은 52건(국민 2, 공익 50)이며, 이 중 31%인 16건만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국민·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결정비율>

(단위 : 건, %)

구 분	연 도	접 수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실시 결정비율 [(B+D)/ (B+C+D)]
			소 계 (A)	감사 실시 (B)	기각 (C)	각하	취하 등	감사중 (D)	검토 중	
국민 감사 청구	'21년	28	28	5	18	-	5	-	-	21.7
	'22년	39	37	5	30	1	1	2	-	18.9
	'23년	24	22	-	17	3	2	2	-	10.5
공익 감사 청구	'21년	188	188	51	111	19	7	-	-	31.5
	'22년	144	143	44	73	17	9	1	-	38.1
	'23년	162	125	16	82	23	4	34	3	37.9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국민제안감사청구 중 공익감사청구가 감사 실시완료 16건, 처리 중 37건으로 감사실시 결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감사수요와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완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2023년도 접수된 공익감사청구사항 중 감사실시를 완료한 감사청구의 평균 감사처리 기간은 135.4일이나, 훈령 상 처리 기간은 6개월로 되어있는 점을 보면, 당초 훈령상 처리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제24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제8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u>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u> 다만, 청구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감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적극행정 지원 :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개요

□ ‘적극행정 지원(1131-304)’은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예산현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이 중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적극행정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적극행정 지원	341	341	-	-	341	316	-	25

* 자료 : 감사원

나.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나 징계·시정 등의 처분 요구, 개선 등의 권고·통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 등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감사원법」 제36조⁸⁾).⁹⁾

○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 국내여비 예산 항목에 사실관계 확인 등 재심의 청구 처리에 필요한 추가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¹⁰⁾, 2023년 재심의 처리 관련 국내여비 예산은 1,400만원임.

□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의 청구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제38조제3항¹¹⁾).

-
- 8)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참고로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재심의 청구 안내, 재심의 결정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https://www.bai.go.kr/bai/exClaims/reExClaims/info>).
- 10) 2024년도 예산부터 ‘적극행정 지원’ 사업 내 재심의 관련 예산을 ‘감사활동경비(1131-303)’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함.
- 11)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처리 건수 중 법정기한(2개월 이내)을 준수하여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최대 18.7%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매년 80% 이상의 재심의 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처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전체 처리 건수	기한 준수 처리 건수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처리 건수		평균 처리기간
			2개월~1년	1년 초과	
2019	32 (100.0)	6 (18.7)	17(53.2)	9(28.1)	231
			26(81.3)		
2020	48 (100.0)	5 (10.4)	36(75.0)	7(14.6)	213
			43(89.6)		
2021	46 (100.0)	4 (8.7)	18(39.1)	24(52.2)	294
			42(91.3)		
2022	22 (100.0)	2 (9.1)	9(40.9)	11(50.0)	325
			20(90.9)		
2023	53 (100.0)	2 (3.8)	18(33.9)	33(62.3)	474
			51(96.2)		

* 자료 : 감사원

□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국회는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여 왔고¹²⁾, 이에 감사원은 2018년 2월 재심의 청구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9년 재심의 청구 처리 시 먼저 청구된 재심의 청구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며 2023년 2월 단순한 사안의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음.

12)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결산예비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및 2024년 예산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및 2021년 결산분석보고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에 머물렀고, 1년 초과 처리 비율(62.3%) 및 평균 처리기간(474일) 역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해 재심의 청구가 가장 지연되어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음.
- 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히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법정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심의 청구의 신중한 처리 못지않게 신속한 권리구제 역시 중요하고, 「감사원법」에서 재심의 청구의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심의 청구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처리되는 재심의 청구의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재심의 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474일로, 1년을 훌쩍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6.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 욕실 환경개선 공사 및 감사인력풀제 시설 개선평사 관련

가. 개요

□ ‘노후시설 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01-151)’는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설비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감사 활동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예산현액 45억 1,400만원 중 34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4,546	4,546	-	729 △761	4,514	3,411	930	173
·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압차료 등	2,014	2,014	-	289 △226	2,077	1,497	542	38
·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61	261	-	3	264	264	-	-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523	523	-	-	523	328	156	39
·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648	648	-	7	655	389	232	35
· 감사인력 운용 개 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1,100	1,100	-	430 △535	995	934	-	61

* 자료 : 감사원

나.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기획재정부장관
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는 내역사업인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의 내내역사업으로, 감사교육원의 남녀
공동욕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임.

○ 2023년 예산으로 1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세출예산 요구내역>

(단위: 천원)

내역	요구액
계	154,742
실시설계비(420-02)	11,476
공사비(420-03)	139,070
감리비(420-04)	2,573
시설부대비(420-05)	1,623

* 자료 : 감사원

(1)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 감사교육원은 2023년 상반기에는 남자 욕실에 한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2023. 6.)하였으나 하반기에 철거 부분 및 여자 욕실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을 추진(2023. 10.) 후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남녀 공용욕실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역조정¹³⁾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비는 2,354만원, 시설부대비는 355만원을 세출예산 현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고, 공사비는 2억 3,232만원 전액을 차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세출예산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천원)

내역	세출예산	집행액	초과집행액	사고이월액
시설계비 (420-02)	11,476	23,540	12,064	-
공사비 (420-03)	139,070	-	-	232,319
시설부대비 (420-05)	1,623	3,553	1,930	-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 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13) 기계실 MCC 판넬교체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

○ 감사교육원은 2023. 6. 20. 남자 욕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의 계약을 통하여 실시(이하 ‘1차 실시설계’라 한다)하였으나, “철거 부분 및 여자 욕실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을 추진 후 자동제어 공사 등의 예산집행 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함”¹⁴⁾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2023. 10. 1차 실시설계를 진행한 업체와 추가 실시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이하 ‘2차 실시설계’라 한다)하였으며, 남성욕실 철거 및 여성욕실에 대한 2차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공사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계약건명	계약기간	발주금액 (제안요청서)	낙찰액 (계약금액)	계약 업체 (대표자)	집행과목	수의계약 사유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	23. 5. 15. ~ 23. 6. 13.	11,440,000	11,440,000	T건축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저가)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	23. 10. 20. ~ 23. 11. 19.	12,100,000	12,100,000	T건축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저가)

* 자료 : 감사원

14)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추가) 추진 계획보고(2023.10.)」, 감사원 제출자료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한 실시설계가 이뤄진 사례가 없어 관련 지침 숙지가 미비했으며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나, 기계실 MCC 판넬교체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여자 공동욕실에 대한 추가 설계 및 공사 입찰을 진행한 것은 당초 사업 목적인 ‘남녀 공동 욕실 환경개선’과 남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달리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남자 욕실 공사에 관한 예산만 반영되었고 감사교육원은 편성된 예산 외의 범위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과다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의 금액(재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¹⁵⁾.

15)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 감사교육원은 2023. 11. 2차 실시설계 완료 후 2023. 12. 1. 조달청에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육실 환경개선공사” 시설 발주계획을 등록하였고, 2023. 12. 4. ~ 2023. 12. 11.의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2023. 12.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를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비 2억 3,232만원 전액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 감사교육원은 2차 설계용역이 종료되고 2023년 예산에 편성된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 공사의 내내역사업인 ‘공기조화기 등 교체’의 공사비 집행 잔액 1억 1,178만원¹⁶⁾을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육실 환경개선 사업에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연말이도래할 때까지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설계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 자금을 연말이 되어서야 확보하는 등 동사업은 계획과 집행이 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측면이 크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비 전액을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6) 총 공사비 217,768천원 중 105,988천원(약 48.7%)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과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
기류,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로 집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420-05)는 공공요금, 수용비, 공사
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음.

○ 감사교육원은 시설부대비(420-05)를 사용하여 공동욕실 탈의실에서
사용할 용도로 인조라탄 재질의 벤치 테이블 3개, 라운드 스톨
테이블 3개를 총 3,553,000원에 구입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탈의실 벤치 구매 견적>

(단위: 원)

품 목 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브리스톨 벤치 테이블 1500 - 화이트워시(150cm*46cm*43cm)	1	623,000	623,000
브리스톨 벤치 테이블 1800 - 화이트워시(180cm*46cm*43cm)	1	750,000	750,000
브리스톨 벤치 테이블 1800 - 다크브론즈(180cm*46cm*43cm)	1	750,000	750,000
맨하탄 라운드 스톨 테이블 600 - 앤틱허니(Dia.60*39)	1	353,000	353,000
맨하탄 라운드 스톨 테이블 600 - 앤틱허니(Dia.60*39)	1	353,000	353,000

품 목 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맨하탄 라운드 스톨 테이블 750 - 앤틱허니(Dia.75*34)	1	420,000	420,000
D/C 적용 및 화물배송비	-	△19,000	△19,000
부가가치세	-	323,000	323,000
계	6	3,553,000	3,553,000

* 자료 : 감사원 제출자료를 재구성

- 그러나 탈의실 벤치 구입비는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산 항목에 부합하는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감사 인력풀제 시설 개선공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는 감사역량 최대화 및 감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감사 인력풀(pool)제에 따른 시설 개선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사업임.
- 감사원은 당초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11억원(일반수용비 1억 1,700만원, 설계비 6,200만원, 공사비 9억 1,300만원, 감리비 1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은 당초 3개 건물의 11개 층¹⁷⁾(50개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집행 도중 공사 대상층을 본관 7층, 8층 두 개 층(8개과)으로 축소하였음.
- 그 결과 감사원은 당초 공사예정대상 11개 층 중 2개 층(약 20%) 공사에 편성된 예산의 약 85%인 9억 3,400만원(일반수용비

17) 본관: 4층·5층·6층·7층·8층(5개 층), 제2별관: 1층·2층(2개 층), 제4별관 1층·2층·3층·4층(4개 층)

7,300만원, 설계비 3,100만원, 공사비 4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었음.

- 한편, 감사원은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에 21억 4,300만원(일반수용비 1억 5,800만원, 실시설계비 8,600만원, 공사비 15억 700만원, 감리비 2,6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4년 예산액
	당초	추경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1,100	1,100	-	430 △535	995	934	-	61	2,143
· 일반수용비(210-01)	117	117	-	△32	85	73	-	13	158
· 실시설계비(420-02)	62	62	-		62	31	-	31	86
· 공사비(420-03)	913	913	-	△503	410	404	-	6	1,507
· 감리비(420-04)	1	1	-	-	1	-	-	1	26
· 시설부대비(420-05)	7	7	-	-	7	-	-	7	10
· 자산취득비(430-01)	-	-	-	430	430	426	-	4	356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개요 및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¹⁸⁾.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관련 개요>

- ① 공사 목적 : 감사역량 최대화 및 감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감사 인력풀(pool)제에 따른 시설 개선 공사
- ② 공사 취지 :
 現 과별 사무실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고정 감사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유연한 감사반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국별 사용 가능한 공용비품을 과마다 구비함으로써 사무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 →
 新 사무실 칸막이를 해체하여 국별로 개인별 지정 좌석을 없애고 감사인력을 통합·배치하여 감사사항별 필요인력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되는 공간에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 ③ 사무공간 개선 대상 : 본관 4개층(4~8층, 면적: 4,899.35㎡), 제2별관 2개층(1~2층, 면적: 1,993.6), 제4별관 4개층(1~4층, 면적: 3,093.29㎡)을 합한 총 11개층 9,986.24㎡, 50개과
- ④ 공사 일정 : 1월 실시설계 → 2~3월 개선공사 및 사무실 배치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편집)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내 역	산출 근거	금 액
일반수용비 (210-01)	사무집기 이동배치 등 이사용역비	2,600,000원*50개과*0.9	117
실시설계비 (420-02)	기존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배치 등 시설 개선공사 설계비	967,000,000원*6.78%*0.945	62.2
공사비 (420-03)	기존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배치 등 시설 개선공사비	96,800원*9,986㎡*0.945	913.5
감리비 (420-04)	기존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배치 등 시설 개선공사 감리비	495,000원*1식	0.5
시설부대비 (420-05)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967,000,000원*0.74*0.945	6.8
계			1,10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18)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편집하여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게재한 것임.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관련 개요>에 수록된 공사 계획에 의하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1월 중에 실시하고 2~3월간 3개 건물 11개 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감사원은 5월이 될 때까지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5월에 이루어진 내부검토에서 공사 명칭인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개선공사’를 ‘감사인력 운용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으로 변경하면서, 개선 내용에 예산편성의 목적인 ‘사무실간 칸막이 철거 및 각 층별 공용공간 신설’ 외에 노후 시설 개보수의 성격을 지닌 ‘내부 인테리어(사무실 바닥 교체와 벽체 도장 공사 등)’와 자산 취득의 성격을 지닌 ‘가구·의자 교체’를 추가하였음.
- 결국 감사원은 23년도 실시설계는 3주간(23. 5. 29. ~ 23. 6. 16.)에 본청 7층 및 8층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나머지 감사부서에 대하여는 2024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실시설계비 총액 약 6,200만원의 약 50%인 약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3년 초 본청의 도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사무실 가구 배치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를 그대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예산 편성 당시 사무실 간 칸막이만 철거하여 통합사무실을 구성하는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내부 칸막이를 철거하고 장기간 배치되어 있던 사무용

가구 등을 이동하게 되면 노후된 사무실 바닥 및 벽체 손상 부위가 드러나게 되므로 최소 규모로 바닥재 교체와 벽체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진행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설계비 또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함께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인력풀제 공사와 노후된 감사원 본원의 시설 등을 수리하는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그 취지와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가하였더라도 예산 편성 당시에 없었던 공사의 규모가 총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면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가 인력풀제 공사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공사 명목으로 당초 예산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던 다수의 가구·의자 등 물품을 구매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감사원은 남은 9개 층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공사 범위를 일부 변경하였는바¹⁹⁾, 향후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불요불급한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감사원에 따르면, 24년 예산 편성 이후인 24. 2. 19. ‘기획조정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본관 4층은 풀링제 전면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 대상층을 총 11개 층에서 총 10개 층으로 축소하였음.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가. 개요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 시스템(OASYS),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사이버보안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최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예산현액 89억 8,500만원 중 8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505	7,505	1,480	9 △9	8,985	8,757	55	173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	1,810	1,810	-	△7	1,803	1,768	-	35
· 업무포털시스템 (OASYS) 구축·운영	2,290	2,290	123	△2	2,411	2,323	-	88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469	2,469	1,357	2	3,828	3,760	55	13
·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운영	936	936	-	7	943	906	-	37

* 자료 : 감사원

나.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 전액 불용처리: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은 감사원의 업무포털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사업으로, 구축·운영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 3억 7,300만원 중 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
- 불용액 4,500만원 중 4,200만원은 내내역 사업인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액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음.

<OASYS 구축·운영 시설장비유지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OASYS 구축·운영	시설장비유지비 (260-01)	373	328	-	45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강화된 포렌식 절차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 목적으로 2022. 11.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관련 포렌식 장비(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고, 2023년 예산 편성시 2022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상용 SW 유지관리 등급별 서비스 수준 및 적용요율)에 근거하여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42,405,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260-01)에 반영하였음.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기 능	수 량	도입단가(원)	유지보수 요율(%)	유지보수 금액(원)
모바일	증거 수집 장비	1	38,800,000	18	6,984,000
포렌식	증거 분석 프로그램	1	78,000,000	18	14,040,000
컴퓨터 포렌식	MD-HWP	2	42,000,000	16	6,720,000
	Detego	1	5,500,000	14	770,000
	EnCase	2	14,000,000	14	1,960,000
	X-way	2	7,200,000	14	1,008,000
	DFAS	2	32,000,000	16	5,120,000
	Intella Pro	2	23,000,000	14	3,220,000
	AXIOM	2	17,600,000	14	2,464,000
	R-Studio	1	500,000	14	70,000
	Vm-ware	1	350,000	14	49,000
	합계	17	258,950,000		42,405,000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당초 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절차에 편성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S/W 사용권 갱신 및 노트북 등 장비 구매가 반드시 필요(사용권 만료 S/W 및 장비 미사용 시 업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산취득비 (430-01목)”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3. 10. “착오로 잘못 편성된 비목에 대하여 전용 승인한 전례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감사원은 42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

- 감사원은 이러한 불용처리에 대하여, 포렌식 유지관리 비용은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SW 갱신비용으로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2023년 편성 당시에는 포렌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갱신 비용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으로 판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편성한 것이며, 불용처리로 갱신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포렌식 관련 SW는 사용 라이선스의 만료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함.

<만료 후 사용불가 라이선스>

구 분	품목명	수량	만료일자	용도
복구SW	EaseUS	2	23. 12. 19.	· 파일복구, 검색 등 종합적인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SW
검색 S/W	dtSearch Desktop	1	23. 12. 8.	· 문서파일명 또는 문서 내용을 검색하는 SW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감사원은 갱신형 라이선스에 필수적인 SW갱신에 관한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편성하여 사실상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따라 SW 갱신을 하지 못하여 복구 SW 및 검색 SW(EaseUS, dtSearch Deskto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파일복구, 검색 복구 등 종합적인 복구 기능 지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향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항목을 올바르게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국제교류협력강화 : 사업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가. 개요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는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²⁰⁾, 등 국제감사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 참석 및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에는 예산액 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용 증액 3억 8,300만원 및 전용 감액 2억 400만원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10억 100만원으로, 이 중 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제교류협력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교류협력강화	822	822	-	383 △204	1,001	988	-	13
· 세계감사원장회의 관련 교류	180	180	-	187 △158	209	202	-	7
· 국제감사기구 회 원국 회비 등	108	108	-	-	108	108	-	-
· 기타 국제교류	144	144	-	88 △11	221	221	-	-
· 기타 제경비	64	64	-	△25	39	37	-	2
· ICC 외부 회계감사 수행	259	259	-	76 △9	326	322	-	4
· 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67	67	-	32 △1	98	98	-	-

* 자료 : 감사원

20)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각국의 최고감사기구 상호간의 감사관련 지식 · 정보 · 경험의 교환을 장려함으로써 감사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2019년 8월 기준 가입회원국 수는 194개국이고 별도의 본부없이 의장국이 3년마다 선출됨. 주요활동으로 공공회계감사 분야에서의 의견과 경험 교환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 개최와 회계감사 등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활성화 및 연구보고서 · 논문 발간을 들 수 있음. 매년 이사국이 참석하는 이사회와 3년마다 전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함

나. 사업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 아시아감사원장회의(이하 “ASOSAI”²¹⁾)는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의 아시아 지역기구로서 아시아 지역 내 최고감사기구 간 협력과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79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총회 후 설립되었는바, 이사회는 매년, 총회는 3년마다 개최하고 있음.
- 감사원은 1979년 5월 ASOSAI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총 3회²²⁾에 걸쳐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개최된 제58차 ASOSAI 이사회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회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사원은 2023년 9월 19일 부산에서 “제59차 ASOSAI 이사회”를 개최함.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개요>

일 시	2023. 9. 19.(화) ~ 2023. 9. 22.(금)(4일간)
장 소	파크하얏트부산
참석자	· 이사국, 참관국 등 16개국 및 2개 기관 99명(동반자 8명 포함) - 의장국/사무총장국: 태국 / 중국 - 이사국/감사국: 한국, 인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러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 참관국/참관기관: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 INTOSAI 개발기구, INTOSAI 저널
주요 일정	· 9. 19.(화): 역량개발위원회 사전회의 · 9. 20.(수): 역량개발위원회 회의, 전략계획·규정개정 TF, 환영만찬 · 9. 21.(목): 이사회 1차 회의, 의장국(태국) 주최 만찬 · 9. 22.(금): 이사회 2차 회의, 문화행사, 사무총장국(중국) 주최 만찬

* 자료 : 감사원

21) Asian Organis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회원국 간 감사분야에서 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해 세미나·회의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환경감사 워킹그룹, 지속가능개발목표 워킹그룹, 위기관리감사 워킹그룹(WGCMA) 활동을 함

22) 1982년 ASOSAI 제2차 총회 및 제4·5차 이사회, 1990년 6월 제15차 이사회, 2001년 10월 제30차 이사회

□ 감사원은 2023년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사업을 위해 총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 1억 2,400만원을 충당하였고 예산현액 1억 9,000만원 중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비목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관련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일반수용비 (210-01)	14,000	Δ13,000	1,000	947	· 사무용품 구매 등
임차료 (210-07)	43,500	Δ43,500	-	-	
일반용역비 (210-14)	-	170,000	170,000	168,800	· 행사대행용역 · 수송차량 추가임차 · 통역장비등 추가임차 · 회의실 추가임차 등
국내여비 (220-01)	-	17,000	17,000	15,161	· 개최장소(부산) 사전 답사 등
사업추진비 (240-01)	8,550	Δ6,363	2,187	2,187	· 간담회 개최 등
계	66,050	187,000 Δ62,863	190,187	187,095	

* 자료 : 감사원

○ 특히 감사원은 당초 편성 예산인 6,600만원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2,4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용역비(210-14)로 이는 동 사업의 추진방식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 것임.

○ 감사원은 당초 동 사업의 직접 수행을 전제로 집행 목적에 따라 일반수용비, 임차료, 사업추진비만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준비 과정에서 추진방식이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조정 및 전용을 통해 일반용역비²³⁾(210-14) 1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행사대행 용역계약 1건 및 추가 소요에 따른 임차 용역계약 3건 등 총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제회의 개최 등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59차 ASOSAI 이사회”의 경우 총 16개국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만큼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국제회의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의 추진방식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감사원은 PCO 용역계약 관련 절차 과정에서 예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²⁴⁾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²⁵⁾(계약 등)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²⁶⁾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23)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p.162)에 따르면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함

24)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5) 「국고금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의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 그런데 감사원은 PCO 선정에 필요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PCO 행사대행 용역입찰 공고에 앞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를 조달하기 위해 세목조정(2023. 3. 6.)을 하였는데 이때 확보된 일반용역비 예산은 1억 1,300만원에 불과함.
- 그런데 감사원은 참여국 확대 등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을 통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하였고, 이로 인해 산출 예산액 대비 확보 일반용역비가 3,700만원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예산으로 하여 PCO 용역계약 관련 결재(2023. 3. 23.) 및 입찰 공고(2023. 4. 7.)를 진행하였음.
- 이후 낙찰가액 1억 3,800만원으로 PCO 용역계약을 체결(2023. 6. 7.)한 후에야 예산 전용(2023. 6. 12.)을 통해 부족분 3,700만원을 조달하여 해당 용역계약 전체 예산인 1억 5,000만원을 확보함.

26)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행사대행 용역계약 진행경과>

(단위: 천원)

일 자	일반용역비 배정액	비 고
2023년도 당초 예산	-	· 일반용역비 미편성
2023. 3. 6.	113,000	· 동 세부사업 내 세목조정 (일반수용비(25,000천원) → 일반용역비) (임차료(88,000천원) → 일반용역비)
2023. 3. 7.	113,000	· 의장국·사무국과의 화상회의에서 일정 및 참가국 확대 요청
2023. 3. 23.	113,000	· 행사대행용역계약 추진계획 결재 (사업예산: 150,000천원)
2023. 4. 7.	113,000	· 입찰공고 (사업예산: 150,000천원)
2023. 6. 7.	113,000	· 선정 업체와의 계약체결(계약금액 138,000천원)
2023. 6. 12.	150,000	· 3,700만원 전용(1차) 및 배정 (기본경비 복리후생비(20,000천원) → 일반용역비)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추진비(17,000천원) → 일반용역비)
2023. 9. 4.	170,000	· 2,000만원 추가 전용(2차) 및 배정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 추가 임차용역 필요)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²⁷⁾에서 PCO 용역계약 부족분에 대한 전용(1차) 승인을 받은 당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용 승인된 예산을 즉시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함.

27)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그러나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 일뿐 예산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통상 예산 배정, 지출원인행위 등 전반적인 재정지출 행위는 「국가재정법」 제97조의2²⁸⁾에 따라 도입된 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완성된다는 점에서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으로도 예산 확보가 완료된 후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감사원은 PCO 용역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1억 5,000만원으로 결재와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 지출을 예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²⁹⁾ 지출원인행위 준칙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감사원은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소요 예산의 확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8)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9)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필요

- 감사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사업의 추진방식이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 등을 통해 일반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는바, 이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 예산, 건설비, 일반용역비 및 연구연구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³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다른 비목과 달리 낙찰차액 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지침과 달리 PCO 용역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수송차량, 통역장비 등을 추가 임차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3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 관련 예산> p. 88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 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비> p.220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일반용역비> p.163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용역비> p.187

○ 낙찰차액은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 사용 기준을 따른다.

-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사업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총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우선 입찰을 통해 선정된 PCO와 낙찰가 1억 3,800만원에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이후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에 대한 추가 임차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 2,000만원을 전용(2차)한 후 3건의 별도 임차용역 계약체결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음.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관련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일반용역비 (210-14)	-	170,000	170,000	168,800	1,200	· 행사대행용역비 138,000 · 추가 임차 29,620 - 수송차량 14,300 - 통역장비등 12,320 - 회의실 3,000 · 기술평가수당 1200

* 자료 : 감사원

- 그런데 최초로 체결한 PCO 용역계약 예산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낙찰가가 1억 3,8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용역비 불용액은 낙찰차액인 1,200만원 이상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의 일반용역비 불용액은 120만원에 불과한 바,

이는 감사원이 낙찰차액을 PCO와의 용역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체결된 3건의 계약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는 2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로서 행사 시작일이 임박했고 행사 개최 과정에서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의 추가 임차가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사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불용처리 않고 사용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존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을 추가 소요에 사용³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 후 과업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 동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8조³²⁾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³³⁾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바³⁴⁾,

3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3

<일반용역비>

다. 낙찰차액 사용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2)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3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4)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 22 ~ 25

다.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용역비 전용(2차) 승인을 위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당시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라도 거치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여타의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방식으로 보임.

- 감사원은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되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가. 개요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는 라오스, 몰디브, 르완다 등 3개 국가 내 감사원의 관리자급 직원에 대하여 초청연수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그 간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 시스템 및 감사 기법을 전파하는 사업임.
- 2023년에는 예산액 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기구 역량강화 (ODA)	297	197	-	-	297	294	-	3

* 자료 : 감사원

나.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 ODA 예산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³⁵⁾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편성³⁶⁾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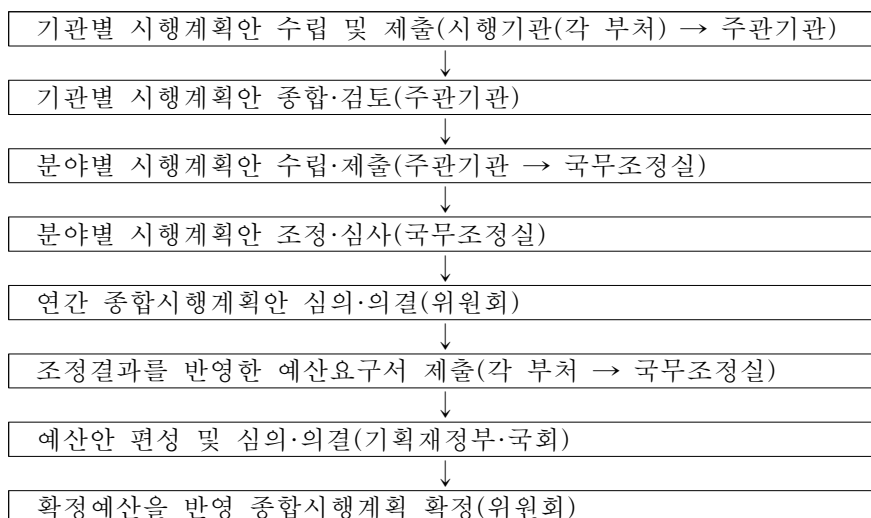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매년 초 ODA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각 부처)에서 작성한 “기관별 실시계획안”을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및 외교부³⁷⁾)에서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함.

○ 이후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함.

35)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36) <우리나라 ODA 추진 절차>



※ 「2021 ~ 2023대한민국 ODA 백서」 (2024년 2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p.56

3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양자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양자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함

- 이와 같이 ODA 예산편성에 앞서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ODA 특성상 그 사업의 범위나 종류 등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ODA 성격과 맞지 않은 항목을 제거하는 등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ODA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기관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맞추어 ODA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2021년부터 ODA 사업으로서 「감사기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앞서 설명한 ODA 추진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비용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직접적인 교육 업무 이외의 각종 부대 업무³⁸⁾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일반용역비 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억 4,17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용역비로 ODA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비용을 집행하였음.

38) 출입국지원, 연수장소 및 식사제공, 연수과정 설계지원, 연수생 관리, 콘텐츠 제작 지원, 외부활동 운영 등

- 감사원은 ODA 용역업체를 통해 “감사교육원 홍보 영상(국문·영문)을 제작하여 공식 블로그, 유튜브 및 감사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해당 영상은 감사교육원의 층별 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의 단순 기관홍보 영상으로, 개발도상국 감사기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ODA 용역 과업 산출내역 중 영상물 제작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과업 항목	집행액	비 고
라오스	사진 및 영상촬영	2,700	-
	하이라이트, 스케치영상	1,500	-
	스케치영상(영문) 추가제작	200	-
몰디브	사진 및 영상촬영	4,000	-
	하이라이트, 스케치 영상	1,600	-
	교육원 홍보영상	1,500	교육원 방문 촬영 및 편집
르완다	영상(스케치 및 홍보영상)	2,050	행사스케치 영상 및 감사교육원 홍보영상
계		13,550	

* 자료 : 감사원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되는 용역계약 특성상 예산산출내역서에 책정된 지출항목별 예산과 실소요액의 차이가 발생³⁹⁾하는바,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향후 ODA 대상 국가들과의 협의 시

39) 감사원은 용역계약의 경우 각 지출항목의 비용을 추정하여 산정된 ‘예산산출내역서’에 기초하여 총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나, 초청연수 진행시에는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덜 소요되는 항목이 발생되어 지출항목별 집행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감사교육원 소개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위해 약 150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영상⁴⁰⁾은 별도로 제작되었고, 해당 영상은 감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나 성과 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감사교육원의 시설을 단순히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2023년을 포함하여 그동안 실제 연수는 주로 외부 호텔에서 진행⁴¹⁾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대상 국가들과의 협의 시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비록 집행규모는 소액이나 ODA 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항목을 계약 이후에 추가하여 ODA 용역업체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회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행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사전통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ODA 종합시행계획 수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ODA 시행계획안과 종합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ODA 사업의 특수성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0) 「2023 감사교육원 국제과정 소개」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공식 유튜브에 게재됨

41) 2021년 신규편성 이후 2023년도까지 모두 서울 또는 연수국 소재 호텔에서 교육을 진행함

참 고 자 료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원활한 감사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19년과 2020년 말 각각 12명과 1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2021년과 2022년 말 각각 43명과 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7월 말 현재 70명이 부족한 상황임 - 결원은 5급 이하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2022년 말 결원 75명 중 6급과 7급에서 각각 32명과 30명 발생 - 3년간 특별채용 인력의 연내 퇴직 대비 충원 인원 수가 적고 그에 따른 결원 인원 수도 증가 (2020년 3명→2022년 8명)하는 추세 ○정원 대비 결원의 증가는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률의 감소 (2020년 98.2%→2022년 96.8%) 및 불용액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결원 규모가 커에도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 및 결원 다수 발생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특정직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감사원은 2024년 1월 마련한 ‘감사인력 충원방안’에 따라 2024년 2월 중 법학 전공 석·박사 경력채용 및 7급 감사직 공채 등으로 선발한 29명을 임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2024. 2. 5. 현재 26명 임용 완료) - 7급 일반 행정직 공채 및 감사직 임용 유예자 등 36명을 연내 추가로 임용하여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 또한, 경력채용의 경우 연간 채용 일정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채용 분야는 연중 상시적으로 공고하는 등 특정직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2년 연속 발생한 일반수용비 용도 외 사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주의, 제도개선]	○[지적사항] 일반수용비로 2022년 화훼구매(344만원), 2021년 전동스크린 등 설치(219만원), 건물 청소(308만원)에 집행하였는데, 2021년 결산 당시 일반수용비를 용도 외 사용한 건이 시정되지 않고 2022년에도 발생하였음 ○원장의 관사는 업무(공적) 목적과 주거(사적) 목적이 혼재된 공간으로 물품구매,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관사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 지출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 업무와 무관하고 공적 목적이 불분명한 퍼걸러 설치에 2,000만원을,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전동스크린 등에 279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일반수용비의 용도 외 사용 원인을 파악하고 용도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감사원은 감사원장 관사 예산을 사적 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할 것(제도개선)	○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다르게 일반수용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부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음 ○ 감사원장 관사 관련 예산은 공적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등 사적 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3) 감사교육원 교육초빙 강사료 집행 개선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2년도에 전체 초빙 강사료 예산액 2억 7,3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강사료 예산 중 31%에 해당하는 8,400	○ 2024년도 감사교육원 초빙 강사료 예산은 전년 초빙 강사료(2억 7,879만 원) 대비 82% 수준인 2억 2,77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교육과정은 초빙 강사료가 계획대비 초과집행, 일부 교육과정은 집행이 전혀 없는 등 교육과정별로 예산집행 수준의 편차가 크고, 매년 초빙 강사료 예산의 30% 정도의 불용이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강사료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어 보임 ○계획한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는 강사료 예산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고위직 대상 교육과정 예산 전액 불용 - 과장급 이상 교육과정 3개는 전액 불용,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또한 집행을 저조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강사료 예산편성 시에는 과거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 앞으로 초빙 강사료 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음
(4) 차량 등 임차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액 조정 개선 필요 [시정]	○[지적사항] 최근 3년간 매년 차량 등의 임차료(210-07목)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감액된 임차료 전액을 매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증액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년도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조명 위치변경 등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유지보수 추가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차료(210-07목) 집행 잔액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충당하였으나 - 앞으로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22년도에는 전년보다 늘어난 1억 2,000만원을 조정하여 모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증액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반복적으로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시정할 것	○ 또한 2024년도에는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료 예산을 전년 대비 153백만원(12.2%)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5) 감사원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성과목표 등 추가 개발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 예산 및 성과계획은 단일 전략 및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목표를 <건정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로 하고 있음 ○감사원은 프로그램 목표 주요 내용의 ‘배경 및 의의’를 ‘감사원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비효율적 예산 운용, 고질적 비리, 무사안일 및 소극행정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저조’와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처리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공직사회 판단을 존중하는	○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해왔으며, 20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등 소통의 필요성 대두'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에 대한 언급은 없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6) 자체감사 관계관회의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등 [제도개선]	○[지적사항] 동 예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최근 3년 간 전체 사업비 중 자체감사관계관 회의 항목은 2020년도에는 23%, 2021년도 미집행, 2022년도 11%만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포상행사 및 권역별 설명회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주된 항목보다 부가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의 종류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을 것	○ 2024년도 예산편성 시 '우수 자체감사활동 포상 행사' 및 '권역별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 등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 '자체감사관계관 회의'와 직접 관련된 사업만 해당 예산에 편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목적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국회 예산심의를 받았음 <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table> <tr> <th>구분</th><th>2023년 예산</th><th>2024년 예산</th></tr> <tr> <td>자체감사관회의</td><td></td><td>20,000</td></tr> <tr> <td>자체감사활동 포상</td><td>90,000</td><td>30,000</td></tr> <tr> <td>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td><td></td><td>40,000</td></tr> <tr> <td>합계</td><td>90,000</td><td>90,000</td></tr> </table>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자체감사관회의		20,000	자체감사활동 포상	90,000	30,000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		40,000	합계	90,000	90,000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자체감사관회의		20,000															
자체감사활동 포상	90,000	30,000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		40,000															
합계	90,000	90,00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 일반수용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실무부와 자체감사기구 간 워크숍·설명회 개최, 감사활동 관련 협의 및 애로 사항 청취 등 소통 활동을 수행 하는데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210-01)를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체감사활동 지원·개선 실무협의 예산의 실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210-01) 중 일부를 실무협의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방식을 개선할 것	○ ‘자체감사기구 실무협의 등’ 예산을 감사 관련 협의, 교육활동, 감사문화개선 간담회 등 회의를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실무부서에 집행 유의 사항을 공지하였고 -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 실무협의 등’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8)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 필요	○[지적사항]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은 2018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1명의 직원을 5개월 간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국제 감사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파견	○ 감사원은 2023년 선진 감사기구 훈련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당초 선진 감사기구 훈련프로그램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간을 3개월*(9. 1.~11. 30.)로 확대하였고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주의]	하는 사업이었음 ○ 동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한 이래 당초 계획과 달리 3개년(2018~2020년)동안 계속해서 3주 단기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교육과정이 5개월인 것과 3주인 것은 그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계획과 달리 3주 단기과정으로 집행한 점, 2022년도의 경우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초기부터 목적과 계획이 꿈꿈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추진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선진감사기구 훈련프로그램 사업을 3개년 동안 실시한 사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 단계부터 재설계할 것	* 당초 5개월 교육과정을 계획하였으나 훈련기관인 캐나다 감사책임성재단의 내부 사정으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함 - 2024년에는 캐나다 州 감사사무소에서의 견습과정을 포함하여 총 5개월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기로 캐나다 감사책임성재단과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州 감사사무소 섭외를 진행 중임 ○ 향후에도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이 사업 내용,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9) 국외업무 여비의 일률적 상향조정 지양 필요 및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통역비 집행 부적절 [시정, 주의]	○ [지적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숙박비와 식비에 한하여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등	○ 공무 국외출장 심사 시 최상급자를 기준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음 - 또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부서에 관련 규정 등을 사전 통지하여 자체 점검하는 한편, 국외여비 정산 시에도 이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급에 해당하는 여비”로 조정하 여야 함 -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숙박비와 식비를 최상급자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외업무여비가 다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 준」에 따르면 국외출장 시 지급 되는 여비(220목)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통역비를 관련 지침과 다르게 국외업무여비 (220-02)로 별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외업 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필요 최소한 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로 조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을 수립하여 시정할 것(시정) ○감사원은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준 수하여 통역비와 관련된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것(주의)	확인하는 등 국외여비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국외업무여비 항목에서 통역비가 집행되 지 않도록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부서에 집행 유의사항을 사전 통지하고, 공무 국외출장 심사 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10) 편성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2021년 예산편성 당시 코로나 사태 예 측이 가능했고, 2022년에는 입국	○ 코로나 19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하거나 사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발생 [제도개선]	관련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점점 완화되는 상황*였음에도 코로나 19를 이유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온라인 및 초청연수 병행)과는 달리 연수방식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써 전체 예산(추경) 중 73%인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6. 8.), 입국 전 검사 중단(9. 4.)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계획을 변경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참고로 2023년도 ‘감사기구 역량 강화’ 예산(297백만원)의 경우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의 99%인 29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일부 감액(5백만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11) ODA사업 예산 적정 집행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행사장 등의 임차시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호텔 등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교육원은 자체 강의실 및 회의장 등이 있음에도 호텔 회의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강의실로 사용하였음 - 또한 통역비는 소규모 업무 대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 ODA 사업추진에 따른 외부시설 임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ODA 사업이 온라인 연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감사교육원 자체 강의실 등 일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청 연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감사교육원의 다른 교육과정 일정 및 시설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교육원 내부에서 연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 통역비는 2023년부터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운영비는 용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210-01)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감사교육원은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일용임금 비목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추진비를 사업대상자가 아닌 내부 직원에게만 사용된 점은 부적절한 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행사 및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외부 장소 임차를 지양하고 통역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에 노력할 것	역업체 및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또는 연수생 기념품 구입 용도에 한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 부적절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교육원 내부지침인 「강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거리 기관에 소속된 강사”의 경우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시간보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외에도 여비를 지급하거나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그런데 감사교육원은 내부 직원인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시간보상수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여비나 교통비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강의료 수당이 취지에 부합하게 지급될	○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 위 수당의 지급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음 ○ 감사원 소속 직원의 경우 시간보상수당의 지급 취지,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도 원거리 소재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 - 본원 근무 직원이 감사교육원 강의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여 대면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며, ○ '23. 9월 「강의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시간보상수당을 포함한 강사료 등 총액이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간보상수당의 지급 취지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려하여 강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13)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 필요 [주의]	○[지적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 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 또는 강연 등의 대가로서 1시간당 40만원을 초 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 우에도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6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그런데 감사교육원 내부지침인 「강의료 등 지급기준」은 현직 장관(급)의 기준 단가를 기본 1시간 50만원, 초과 시간당 25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탁 금지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강의료 지급이 가능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강의료 등 지급기준」의 현직 장관(급) 기준단가를 청탁금지법 상한액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2023. 9. 13.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강 사료와 사례금 등의 총액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의료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음
(14) 감사교육원 시설 이용료의 적절한 부과·징수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교육원 강의시설, 생활관 등 휴양시설에는 이용료 (2만원~20만원)가 책정되어 있 으나, 최근 5년간 생활관을 제외	○ 2023년 12월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전· 현직 감사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활관 등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하면 시설이용료 수입이 전무하고, 생활관 시설이용료 수입도 2021년 부터 급감함 - 2018년 58,860천원, 2019년 59,880천원, 2020년 5,010천원, 2021년 260천원, 2022년 240천원 ○2022년 감사원 소속 직원 등 1,981명이 생활관을 총 556건 이용하였으나 내부규정을 근거로 직원 및 가족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용 금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운영이며 다른 공공기관 연수원 운영 사례와도 다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를 적절히 부과·징수하고,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시설 이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	
(15) 심사청구의 법정 결정기한 준수 및 심사 지연 시 행정소송 제기문제에 대한 보완 조치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비율이 국세 사건 87%, 산재 사건 75.9%, 기타 사건 53%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심사청구가 인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처리기간 미준수율이 100%에 달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조기에 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가	○ 감사원은 심사청구사항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심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분야별 전담자 지정, 월별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심사청구 법정 결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와 같이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제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법정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인용률 제고 및 심사청구의 심사 지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심사인력 증원) 2024년 1월 심사관리관실 정원 2명 증원 ▪ (효율적 인력 운용)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조세 분야 심사를 전담 처리하는 등 분야별 전담자 지정·운용 ▪ (목표관리제 도입·운영) 개인별로 월별 최소 처리실적을 설정하고, 처리실적을 월별로 관리 ▪ (선람업무 강화) 국장 등이 매주 신규 배정 건을 선람하여 사건 방향(인용·기각·각하 등) 등을 사전에 검토
(16)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의 감사원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역량 확충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쳐 확정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가 최초 재무제표 개시한 2011년 이후 148.6조원(누적)에 달하고 2022년은 53.6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재무제표 검사를 매년 외부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감사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실지검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	○ 감사원은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022년 8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4년 1월 ‘공공재정회계감사국’(3개과)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자체 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자체 검사기관은 28개였으며, 2025년도까지 5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회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외에 회계학 석사학위 이상 경력자를 새롭게 응시자격 요건으로 확대하고, 채용공고를 연중 상시화하는 등 회계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검사보조인으로 활용하고 있고, 2022년에도 2개 회계법인이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을 수행하였음 - 결산검사는 감사원 책임 하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감사원의 자체 검사역량을 확대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검사보조 용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체 역량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 퇴직 증가 대책을 마련할 것	- 결산·회계검사 역량을 검증하는 내부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감사원 자체 회계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17)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및 적극행정 면책자문 위원회 활성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2년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운영실적을 보면, 현장면책 4건(2021년 14건), 사전컨설팅 인용 27건(2021년 40건), 패스트트랙 활용 2건(2021년 6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신청면책의 2022년 운영실적을 보면, 8건에 대해 적극행정	○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연 1회 추진하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2023년부터 3회 실시(4, 9, 12월 시행), ② 현장컨설팅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지감사 통지 시 현장컨설팅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2023년 5월) - 사전컨설팅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사안을 적극 발굴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접수 76건(인용 35건, 기각 1건, 의견제시 5건)으로 2022년 말 기준 접수 50건(인용 27건, 기각 3건, 의견제시 0건) 보다 152% 증가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면책자문위원회가 1건은 적극행정으로 면책인정, 2건은 일부 인정으로 면책을 의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일부 인정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불인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2024년 4월까지 시정에 준하는 보고할 것	※ '23년은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을 만한 긴급한 사안은 없었음 ○ 2023년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등 재난안전 분야 등에 대한 감사 실시로 적극행정면책 관련 안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문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자문위원은 교체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아 논의하게 하고,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면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자문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증거와 법리 등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등이 다를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의가 자문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18) 용역계약의 연말 체결에 따른 이월액 과다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지적사항]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3억원을 전용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연도말 계약하면서 선금으로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연도말 계약으로 사업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집행관리로 보임 ○OASYS 구축 ISP 수립을 위한	○ 앞으로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 심의 내역과 다르게 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을 과도하게 이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그리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일반연구비로 편성 목적과 다른 WGCMA(위기관리감사워킹그룹) 웹사이트 구축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연구비의 과소 편성으로 용역 과업을 축소하여 2회 발주하였으나 유찰되는 등 ISP 수립 사업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용역 발주 당시 예산 잔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주하여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준칙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국회심의 내역과 다르게 ISP 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용역계약을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과도하게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감사원은 예산을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 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유찰 및 전용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9)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사업지연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지적사항]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수요조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연도말 계약으로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내·외부 관련자 인터뷰 등은 선	○ 정보화사업 수행 시 내·외부 관련자 인터뷰 등 ISP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참고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사업인 2020년 ISP 수립사업에서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SP 사업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수행 시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ISP 사업에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공처리 하였음

2. 2021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결산검사시 책임성 제고 방안마련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수행한 국가재무제표에서 차후 년도에 지속적으로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총 95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 손익의 발생은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바, 감사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결산 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회계교육 강화 등 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 감사원은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2년 8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자체 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임 < 단계별 자체 검사대상기관 확대 방안 > <table><tr><th>구분(회계연도)</th><th>기관 수(누적 기관 수)</th></tr><tr><td>1단계('22년도)</td><td>6개(28개)</td></tr><tr><td>2단계('23년도)</td><td>8개(36개)</td></tr><tr><td>3단계('24년도)</td><td>10개(46개)</td></tr><tr><td>4단계('25년도)</td><td>5개(51개)</td></tr><tr><td>5단계('26년도)</td><td>9개(60개)</td></tr></table> ※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6개 기관을 추가로 자체 검사 실시 중 ○ 또한, 회계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외 회계학 석사학위 이상 경력자를 새롭게 응시자격으로 확대하였고 - 직원들의 회계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검사 및 회계교육과정'을 연 2회로 확대('22년 1회) 운영하고, 전문인력제도 개편 시 회계 전문분야를 신설하고 특화된 보직 경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구분(회계연도)	기관 수(누적 기관 수)	1단계('22년도)	6개(28개)	2단계('23년도)	8개(36개)	3단계('24년도)	10개(46개)	4단계('25년도)	5개(51개)	5단계('26년도)	9개(60개)
구분(회계연도)	기관 수(누적 기관 수)													
1단계('22년도)	6개(28개)													
2단계('23년도)	8개(36개)													
3단계('24년도)	10개(46개)													
4단계('25년도)	5개(51개)													
5단계('26년도)	9개(60개)													
(2)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필요 등	○ [지적사항] 감사원은 2017년부터 결산 검사·확인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외부	○ 감사원은 '22년 8월 '21년 결산 검사 확인 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에 공개하지 않음 ○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 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불 가피한 현금 사용시 원칙적으로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기관들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특수 활동비의 기밀성을 훼손하지 않 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를 매년 공개하고, 2021년 결산 검사·확인시 예산집행지침에 따 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 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	○ 한편,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예산 등 비밀사항(Ⅱ급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22회계연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완료 후 비밀사항을 제외하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3)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 요 등	○ [지적사항] 사전컨설팅 제도의 총 접수건수 및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 실적이 도입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함 - 사전컨설팅 인용/접수 건수: 2019년 39건/101건, 2020년 46건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22년 4월 기존 국가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에 한정된 신청기관을 확대하여 기 초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컨설팅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 위 개정 사항 홍보 및 컨설팅 활성화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4건, 2021년 38건/74건, 2022년 현재 12건/28건 - 패스트트랙 활용실적: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1건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제도가 차별화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위해 '22년 9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사전컨설팅 예산은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4)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등 필요	○ [지적사항] 감사원이 모범 공직자에 대한 포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연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여부가 불확실하고 선발된 모범 공직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2021년도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 8,700만원 중 집행된 내역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로 모범공직자는 표창 외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모범 공직자로 선정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를 설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포상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지	○ '22년 7월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 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 모범사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연찬 외에 포상금을 신설하는 등 포상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였음 ○ 한편, '22년 11월 '20년 이후 모범공직자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포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개인포상자 17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찬을 실시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못한 모범공직자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5)적절한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 [지적사항] 감사원은 일용임금 비목을 집행하면서 비목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집행하였고, 유사사업 보조인력 보수 대비 높은 보수를 책정하여 집행하였음 - 동일인에게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모두 일반수용비 방식으로 집행단가를 산정하였으나 통역비는 일용임금으로, 번역비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함 -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온라인 연수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유사 세부사업인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한 보조인력과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난이도가 유사함에도 보수는 약 2배 정도 높게 책정하여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비목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23년 예산은 통역비와 번역비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비목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음 ○ 또한, '23년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은 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용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일용임금은 편성하지 않았음
(6)연구용역사업 예산 비목	○ [지적사항] 15건의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중	○ '23년 예산의 경우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정 필요 등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 용역’ 등 4건의 연구용역은 감사원의 구성·운영이나 감사활동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일반연구비보다는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 -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연구비는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 용역 등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정책연구비는 과학기술·생산 기술 및 정책개발 관련 연구 등에 대한 반대급부임 ○ 시급성이나 계약 절차 지연(유찰)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말(10월 말 이후) 용역계약 체결로 일반연구비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함 * 2019년 7,900만원, 2020년 1억 4,700백만원, 2021년 1억 1,800만원 ** 2019년 400만원, 2020년 6,500만원, 2021년 1억 8,500만원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일반 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와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를 정확히 분류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일반연구비(감사활동경비) 중 일부를 정책 연구비(감사연구활동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요구할 예정임 ○ 또한, 연도말 용역계약 체결 관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초 연구용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간 추진할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하는 등 연구용역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감사원은 연도말 용역계약 체결 관행의 반복과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	
(7)재심의 처리 법정기한 준수 및 관련 여비 집행실 적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감사원법」상 재심의 처리기한(2개월)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2021년 재심의 처리 건 중 법정기한을 준수한 비율은 8.7%에 불과한 반면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52.2%에 달함 ○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2021년부터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를 별도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던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2021년 집행률 3.13%, 2022년 상반기 집행률 0.41%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 감사원은 '18년 2월 재심의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그간 관계인 권익보호를 위해 청구권 확대·강화에 보다 치중한 결과 업무량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22년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그간 누적되었던 재심의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 예산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52% 감액한 14백만여 원으로 편성하였고 - 앞으로 관계인 면담과 추가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한편,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주의) ○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제도개선)	
(8)직원 등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감사원은 매년 실시하는 감사인 특별소양교육과 과단위 워크숍 관련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직원(1,1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하고, 워크숍 실시 단위별 자유토론 및 팀워크 강화 활동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였음 * 특별소양교육 : 68,000원, 과단위 워크숍 : 50,000원 ○ 동 예산은 워크숍 실시 단위별로 체육활동비, 식·음료비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국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또는 개인카드를 현장 집행한 후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이와 같은 워크숍 관련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비목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정산 방식도 일반적인 정부구매카드	○ '22년 10월 감사인 특별소양교육 및 과단위 워크숍 등 직원교육 관련 예산은 일반수용비 성격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집행 방식을 개선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특별소양교육 및 과단위 워크숍 관련 경비의 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	
(9)지방관사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연도말 지방관사 이용률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관사 임차료의 불용액**이 발생함 * 2019년 : 74.1%, 2020년 : 77.4%, 2021년 : 60.4% ** 2019년 2,900만원, 2020년 5,000만원(감조정 재원 활용), 2021년 7,100만원 - 이는 선임차 후 입주 희망 여부에 따른 관사 운영방식 등으로 사전적 수요과약 및 정확한 임차료 소요액 산출의 한계에서 기인함 ○ 무형자산(440-00목) 예산 편성 없이 기존 관사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신규 임차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 금액만큼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집행	○ '22년 8월 정기 전보인사 시 지방사무소 발령자에 대하여 지방관사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 희망자에 한해 신규 관사를 임차하는 등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관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전보인사에도 사전에 수요과약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정확한 임차료 소요액을 산출하겠음 ○ 한편, '22년 기존 관사 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은 전액 세입처리('22. 12. 6.)하였고, '24년부터 신규 지방관사 임차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 비목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지침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그 예외는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됨 - 예산집행지침상 반환 임차보증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재무제표상 자산(전세권) 감소로 계상되어야 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지방관사 이용자 선호를 반영한 지방관사 임차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것 ○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방관사 반환 임차보증금을 세입처리하고 신규 계약 등을 위한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 비목을 신설하여 세출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업무포털시스템 관련 성과지표 실적부진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OASYS* 구축·운영 사업은 2021년도 성과지표로 ‘OASYS 활용 검색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실적이 목	○ 현재 수행 중인 ‘차세대 OASYS 및 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22년 12월~’23년 4월)을 통해 OASYS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정보검색 결과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OASYS: 감사원 내부의 업무포털 시스템 - 2020년 달성도는 86%, 2021년 달성도는 78.6%로 점차 실적이 저조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OASYS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업무지식과 업무자료를 적극적으로 동 시스템에 구축하는 등 업무지원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 이·전용 등 최소화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기본경비 내 관리용역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타 비목에서 이·전용 및 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년 조정 6,900만원, 2019년 전용 8,000만원, 2018년 전용 8,800만원 ○연례적인 예산의 조정 및 이·전용은 다른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연례적인 예산의 조정 및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감사교육원은 '20. 12. 31. “감사교육원 청사관리용역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1. 1. 1.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맞춰 공무원 전환을 완료함
(2)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청구 평균 처리기간과 법정기간 초과 비율이 증가 -평균처리기간 : 국민감사청구 '18년 44.7일→'20년 71.0일, 공익감사청구 '18년 60.3일→'20년 63.8일 -법정 처리기간 초과 비율 : 국민감사청구 '18년 60.9%→'20년 72.7%, 공익감사청구 '18년 55.6%→'20년 69.4%	○제한된 인력, 청구사항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한 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별 감사청구 건마다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는 등 감사실시에 준할 만큼의 검토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외형상 청구 대비 감사실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전체 감사청구('17~'21.6.)에 대한 감사착수율은 낮은 상황임 -국민감사청구 : 9.8%, 공익감사청구 : 18.2% ○감사실시 결정기간의 장기화와 낮은 감사착수율은 훼손된 공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제도의 실효성 측면 등에서 감사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착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것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의 감사착수율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청구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 적극적 감사실시 원칙 수립 하에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청구 제도 전반을 개선하였음
(3)심사청구 제도 운영시 법정 결정 기한 준수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0년 평균 심사청구 기한은 188일,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평균 처리기한은 349일로, 이는 법정기한(3개월)을 지나 처리됨 -특히,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이 조세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심사청구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심사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	○우리 원은 심사청구사항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미결 집중처리, 유형별 일괄처리, 담당자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장기미결 집중처리) 접수 이후 1년 경과 미결사항 집중처리 ▪ (목표관리제) 담당자별로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 관리 ▪ (유형별 일괄처리) 조세 세목별(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합·병행처리 ○이에 따라, '21년 조세불복 심사청구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평균 처리기간(298일)은 '20년(349일) 대비 51일 단축되었음 -앞으로 법정기한 내 심사청구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4)적극행정 지원 제도 홍보 및 교육강화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신규로 도입·운영 중이나 각 제도 도입후 유의미한 수치상의 개선은 미흡함 -현장면책(2018년 도입) : 2018년 16건, 2019년 10건, 2020년 19건 -사전컨설팅(2019년 도입) : 2019년 82건, 2020년 78건 -패스트트랙(2020년 도입) : 2021년 5월까지 총 12건 ○감사원 홍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외광고 형식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는 일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교육과정도 적극행정 관련 과정이 미흡한 측면(21개 과정 중 1개)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홍보 강화 및 사이버교육과정 확충 검토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21년 구축한 적극행정지원 전용 웹사이트에 우수 사례 등을 업데이트 하고, 관련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겠으며 -감사교육원과 협업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확충하는 등 적극행정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단계별 기준기간 준수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홍보·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21년도부터 적극행정지원 관련 사업비를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분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며,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	
(5)기관장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는 지급 및 지출 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장이 정기적으로 매월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감사원(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 : 2016년 37억 7,400만원, 2017년 34억 6,800만원, 2018년 30억 9,600만원, 2019년 23억 2,200만원, 2020년 18억 7,500만원, 2021년 17억 7,660만원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기관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사항을 점검하고,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는 지급과 지출 방안 모색을 검토할 것	○감사원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집행지침 등을 마련하고 지출증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음 -특히 '21년도 예산심사 과정('20년 11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수활동비 지급대상을 감사정보제출 의무*가 있는 국장급 이하 직원으로 정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1급(고감단가급) 이상 간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보제출의무를 종전 무보직4급 이하 직원에서 국·과장까지 확대 -지급방식도 정보제출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6)비대면 감사 지원 활성화 [제도개선]	○[지적사항] 전자자료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감사 지원 활성화가 필요함. 외교부 행정회계시스템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회계시스템의 경우 노후된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현재 재구축 사업('21. 8월 - '23. 8월)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외교부와 정보연계 대상·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재구축 사업 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비대면 감사 지원을 활성화하고 외교부 행정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정에 맞춰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감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7)공사지연 개선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제1별관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었고, 기존 건물 해체설계 적정성검토 기간 소요 등으로 해체공사 계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지연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1. 12. 28. 건축 공사 외 3개 공종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2. 1. 17.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 ○향후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8)도전적인 성과 목표 설정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과거 교육실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지표 달성도를 지나치게 높게 측정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함 <최근 4년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22년부터 성과관리의 단위가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이수자 수'가 성과목표에서 제외됨 -참고로 '22년 교육계획에서 교육계획 총인원을 최근 3년 평균 교육인원 38,352명 대비 104.2%(39,970명)로 설정하였음 * '22년도 교육계획 상 교육계획 총인원 39,970명은 '21년도 계획인원 33,500명 대비 4,470명(19.3%) 증가한 것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table border="1"> <tr> <th>성과 지표</th> <th>구분</th> <th>2018 년</th> <th>2019 년</th> <th>2020 년</th> <th>2021 년</th> </tr> <tr> <td rowspan="3">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td> <td>목표</td> <td>30,600</td> <td>28,143</td> <td>30,359</td> <td>33,500</td> </tr> <tr> <td>실적</td> <td>28,664</td> <td>35,157</td> <td>38,355</td> <td>-</td> </tr> <tr> <td>달성도</td> <td>94%</td> <td>125%</td> <td>126%</td> <td>-</td> </tr> </table>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과거 교육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도전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	성과 지표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	목표	30,600	28,143	30,359	33,500	실적	28,664	35,157	38,355	-	달성도	94%	125%	126%	-	
성과 지표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	목표	30,600	28,143	30,359	33,500																			
	실적	28,664	35,157	38,355	-																			
	달성도	94%	125%	126%	-																			
(9)교관연찬 과정 개선 필요 [시정]	○[지적사항] 교관연찬 과정은 그간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교육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매년 편성해왔으며, 2020년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였음 ○감사교육원은 교관연찬 대상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교육원 직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직원도 포함하여, 당초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교관연찬 과정은 감사교육원 내 교수요원의 강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감사교육원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사업을 수입대체경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교관연찬 과정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 교육대상을 강의 경험이 있거나 강의 예정자로 한정하여 당초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예정 ○또한, 위 과정에 대해 '23년도 예산요구 시 기본경비로 편성을 추진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과거 교육실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고, 교관연찬의 대상을 교수요원 및 출강 가능성이 있는 강사진으로 한정하며, 교관연찬 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관연찬 사업을 개선할 것	
(10)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 준수 필요 [주의]	○[지적사항] 2020년에 감사교육원이 집행한 교재제작비의 41.6%가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임 -감사교육원은 2019년 12월에 이루어진 감사분야별 과정, 감사실무자에 대한 교재제작비를 2020년에 집행하는 한편, 2018~2019년에 운영된 국제교육 과정과 관련된 강의자료를 모아 2020년에 책자로 발간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감사교육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지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였음 ○또한, 감사교육 교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국가회계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11)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 준수 필요 [주의]	○[지적사항] 2020년도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12월 29일에 개최하여 그 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된 2020년도 예산을 불용하고 2021년도 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출한바, 회	○앞으로 자문위원회 개최 시점을 12월 중순경으로 앞당겨 실시하여 연도내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연구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2)사업기간과 사업비 집행 회계연도 일치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연구과제 수행의 사업기간과 연구보고서 발간비 집행의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당초의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에 반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작성과 발간·집행 연도를 일치시키고 연중 고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 당해연도에 완료된 보고서는 당해연도 발간을 원칙으로 하여 발간·집행 연도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음
(13)감사연구원 직원 교육훈련 및 조직문화 개선사업 개선 필요 [주의]	○[지적사항] 직원 교육훈련 및 조직문화 개선사업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이어져 왔으며, 사업 목적과 달리 외국어 교육 수강료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연구원은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직원 교육훈련 및 조직문화 개선사업 사업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 대면 및 비대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불용액 과다 해소 필요 [주의] [제도개선]	○[지적사항] 퇴직일시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중 무기계약직 퇴직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 중임 -이에 따라 2020년 1억 4,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 6월 현재 집행액도 3,900만원에 불과하여 불용액 규모 확대가 예상됨 ○반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적 설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법정부담금 전액 적립을 위해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 초래가 예상됨 -2020년 가입 전제시 8억 7,300만원, 2021년 가입 전제시 10억 1,400만원 추가 소요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현원차 및 상용임금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0년도의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상용임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예산</th> <th rowspan="2">예산 현액</th> <th rowspan="2">집행 액</th> <th rowspan="2">불용 액</th> </tr> <tr> <th>예산액 (추경)</th> <th>무기계약직 인원</th> </tr> <tr> <td>2017</td> <td>991</td> <td>32</td> <td>991</td> <td>981</td> <td>10</td> </tr> <tr> <td>2018</td> <td>1,987</td> <td>65</td> <td>1,987</td> <td>1,970</td> <td>17</td> </tr> <tr> <td>2019</td> <td>2,268</td> <td>68</td> <td>2,260</td> <td>2,230</td> <td>30</td> </tr> <tr> <td>2020</td> <td>2,393</td> <td>73</td> <td>2,393</td> <td>2,229</td> <td>164</td> </tr> </table>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집행 액	불용 액	예산액 (추경)	무기계약직 인원	2017	991	32	991	981	10	2018	1,987	65	1,987	1,970	17	2019	2,268	68	2,260	2,230	30	2020	2,393	73	2,393	2,229	164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예산불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년도 예산 편성 시 퇴직연금 가입 예산을 삭감하고, 퇴직일시금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근로자 퇴직 시 신규채용을 지체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도 진행 또는 완료하여 '22년 상용임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함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집행 액				불용 액																										
	예산액 (추경)	무기계약직 인원																																
2017	991	32	991	981	10																													
2018	1,987	65	1,987	1,970	17																													
2019	2,268	68	2,260	2,230	30																													
2020	2,393	73	2,393	2,229	16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퇴직금 예산편성과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고용부담금 불용액 과다 문제를 해소할 것(주의) ○감사원은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현원차에 따른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것(제도개선)	
(15)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등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0년 재심의 처리기간(2개월) 준수율이 10.4%에 그치고, 평균 처리기간도 200일을 경과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부적절 -「감사원법」상 연장사유 통지 및 연장 시 처리기간 규정 부재 *「국회법」은 감사원 감사요구에 대해 중간보고, 감사기간 연장 시 처리기간(2개월) 별도 명시 ○2020년 재심의 인용률(18.8%)이 전년(6.3%) 및 5년 평균 재심의 인용률(10.3%)보다 증가하여 감사결과의 완성도 및 신뢰성 저하로 보일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22년 7월 신규 접수분부터 접수 후 법정기한(2개월) 도과 시 처리기간 연장 및 연장사유를 고지하는 '중간통지제도' 도입(「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반영 예정)을 검토하고 -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결정문 체계 개편 등 재심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앞으로도 감사결과가 더욱 높은 신뢰성 등을 가질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청구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연장사유 통지 및 연장시 적정 처리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감사원은 현행 감사시스템에서 감사 결과의 완성도·신뢰성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관리적 문제를 점검할 것											
(16)세수부족에 따른 세출조정 [주의]	○[지적사항] 이 사업의 낙찰차액 일부를 낙찰차액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2020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규정 위반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계약건명</th> <th>발주금액</th> <th>계약금액</th> <th>낙찰차액</th> <th>낙찰차액 사용·용도</th> </tr> </thead> <tbody> <tr> <td>일체형 컴퓨터(1PC형) 구매</td> <td>234</td> <td>211</td> <td>23</td> <td>노후 전산장비 교체(18.9)</td> </tr> </tbody> </table> 자료: 감사원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처리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한정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주의할 것	계약건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용도	일체형 컴퓨터(1PC형) 구매	234	211	23	노후 전산장비 교체(18.9)	○'21년도 정보화 사업(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 전액 불용처리 ○향후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한정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음
계약건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용도								
일체형 컴퓨터(1PC형) 구매	234	211	23	노후 전산장비 교체(18.9)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7)차질없는 공사 사업 추진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사무실 임차료가 발생함 -당초 2020년 3월~12월(10개월)간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2021년 6월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기간도 1년을 연장함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임차 공간의 연간 임대료는 7억 2,072만원, 고정관리비는 월 4,674만원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연간 12억 8,155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함 ※연간 임차료 등 산정내역(실비성 경비 별도) -1,281,548,400 = 임차료(720,720,000) +고정관리비(46,735,700×12=560,828,400)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것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1. 12. 28. 건축 공사 외 3개 공종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2. 1. 17.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 ○향후 제1별관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일정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18)감사원의 결산 검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무제표 기록 이후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금년도('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부처별로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원인을 분석 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 등에 결산검사 결과를 시행 시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국가재무제표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적 오류 가능성을 지속시켜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2018년 8.8조원, 2019년 6.9조원, 2020년 9조원 ○감사원에서 결산보고 시 구체적인 종합감사의견(적정, 한정 등)을 제시하여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에 대한 부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의 발생을 줄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여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보고 시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요구 등 처분요구를 실시하거나 개선방안을 통보할 계획임 ○검사의견(종합감사의견) 표명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및 부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음

4. 2019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직불형 정부 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주의]	○[지적사항] 직불카드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0.5~1.3%)이 신용카드(0.8~1.6%)보다 낮으므로 집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9년도 감사원 관서운영경비의 직불카드 집행금액은 신용카드의 집행금액의 30.8% 수준에 불과하 여 집행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한편, 타 기관의 카드 사용 비중도 관리·감독하 도록 주의할 것	○감사원은 2019년 6월 직불형 정부구매카 드를 시범 도입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전체 실·국으로 확대 실시하였음 -이에 2019년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액 중 직불카드 집행비율이 낮게 집계 되었음 ○2020년은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업 무용 택시, 국외여비 등을 제외하고 관 서운영경비 대부분을 직불카드로 집 행하여 -정부구매카드 중 직불카드 집행 비 율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함 (23.6%→81.3%) (단위: 백만 원, %) <table><tr><th rowspan="2">연 도</th><th rowspan="2">관서운영 경비 집행액</th><th colspan="2">신용카드</th><th colspan="2">직불카드</th></tr><tr><th>집행 액</th><th>비율</th><th>집행 액</th><th>비율</th></tr><tr><td>2019</td><td>3,862</td><td>2,334</td><td>60.4</td><td>719</td><td>18.6</td></tr><tr><td>2020</td><td>3,222</td><td>486</td><td>18.7</td><td>2,113</td><td>81.3</td></tr></table> ○또한 정부에서는 2018년 7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시범 도입한 이후 각 부처에 직불형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바, 향후 직불형 정부구매카드의 보급 및 사용현황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하겠음	연 도	관서운영 경비 집행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집행 액	비율	집행 액	비율	2019	3,862	2,334	60.4	719	18.6	2020	3,222	486	18.7	2,113	81.3
연 도	관서운영 경비 집행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집행 액	비율	집행 액	비율																			
2019	3,862	2,334	60.4	719	18.6																			
2020	3,222	486	18.7	2,113	81.3																			
(2)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따른 국외 여비 집행 [주의]	○[지적사항] 예산편성 시 계획한 국 외출장이 시행되지 않거나 편성 당 시 계획하지 않은 국외출장이 시행 되는 등 국외업무여비가 예산편성	○국외업무여비가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국외업무여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집행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외업무여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심사청구 제도 운영 시 법정 결정 기간 준수 [주의]	○[지적사항] 최근 3년간 인용된 심사청구건은 모두 법정기한(3개월)을 지나 처리되었음 -특히 2019년에 처리된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 평균 심사기간이 445일 걸리고, 처리된 177건 중 93.8%(166건)가 법정기한을 넘김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이 조세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심사청구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심사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 법정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감사원은 그간 심사청구사항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미결 집중처리, 유형별 일괄처리, 담당자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하였음 ▪(장기미결 집중처리) 2018년 이전에 접수된 장기미결사항(65건)에 대해 처리기간(1월~3월)을 설정하여 59건*을 집중 처리 *남은 6건 중 4건은 유사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보 중, 2건은 처리 중 ▪(유형별 일괄처리) 「평균임금 정정」 등 792건은 유사 쟁점별로 분류하고 쟁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괄처리 ▪(목표관리제) 2020년 7월 및 9월에 담당자별로 처리목표(처리가능 사건, 예정처리일)를 설정하고 이행 독려(이행률 82.1%) ○이에 따라, 2020년 처리된 심사청구는 평균 처리기간이 전년(249일) 대비 66일 단축(183일)되었고, -조세(국세)불복 심사청구의 평균 처리기간도 2019년 445일에서 349일로 96일 단축되었음 -앞으로도 심사청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4)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 [주의]	○[지적사항]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 및 어린이집 설치 공사 사업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음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2019년도 예산현액 8억 6,000만원 중 6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어린이집 설치 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4,400만원 중 2,600만원이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계약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관리하여, 2020년도에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성을 확인 후 청구지연 및 계약기간 미도래로 기성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업체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금을 모두 집행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였음 -향후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5)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 재추진 시 면밀한 사업 검토 [주의]	○[지적사항]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 ESS 설치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적 및 화재사고 관련 안전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SS 설치 공사비를 편성한 후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없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전액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ESS 설치 사업 재추진 시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할 것	○정부는 ESS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ESS 의무 설치 기한을 2023. 12. 31.로 연장(당초 '20년 말) -향후 ESS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시 시설의 안전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6)사전컨설팅 처리 기간 단축 및 지속 사업 예산안 반영 [주의]	○[지적사항] 2019년도에 처리된 사전 컨설팅 요청(82건) 중 46.3%(38건)는 법령상 처리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처리되고, 8.5%(7건)는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됨 ○지속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적극행정면책사례집 발간(5,800만원)’ 및 ‘적극행정지원 협의회(600만원)’ 등을 위해 6,400 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의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주의할 것	○2020년도에 처리된 사전컨설팅 요청 (69건) 중 73.9%(51건)는 30일 내 처리 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앞으로 처리단계별 기준기간을 설정 하여 관리하는 등 신속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2021년도 ‘적극행정지원’ 관련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범선행 등 감사 관련 사례집(4,000 만원)’, ‘적극행정지원협의회 개최(600 만원)’ 관련 예산을 반영 ○또한,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음
(7)전산운영경비 (정보화) 사업 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집행률 제고 [주의]	○[지적사항]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였음 (집행률: 37.4~79.4%) ○감사원 실적평가 시스템 구축사업 과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발주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이 회계연도를 도과하였고, 특히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사업은 집행률이 9.84%(예산 21억 2,400만원, 집행 2억 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도 예산 편성시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등 전산운영경비 예산을 감액 편성(2019년 81억 → 2020년 70억) 하였음 -앞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전 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8)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주의]	○[지적사항] ASOSAI-EUROSAI 공동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동 회의 참석비용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편성 취지와 프로그램 예산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할 것	○2021년도부터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외여비를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고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9)감사결과 보고 시기 준수 필요 [주의,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의 2019년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의 「국회법」상 결과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른 결과보고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감사 사안에 따라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거나 사실관계의 철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결과보고 기한을 준수할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 사항의 보고기한이 도과할 경우 향후 처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고기한이 도과된 경우 필요 시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제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음

5. 201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재심의 처리 기간 단축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처분요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의 오류 등에 기인한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재심의 건당 처리기간이 최소 287일에서 최대 371일로 나타나고 있고, 2018년의 경우 6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전체 처리건수 중 13.7%에 불과하고, 전체 처리건수 중 1년을 초과하여 처리된 비율은 35.3%에 달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청구된 재심의가 「감사원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재심의 청구 및 미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측면이 있으나 - 2018년 2월 재심의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신속처리에 노력하여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음 - 또한, 2020년에도 우선처리사항 지정 등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임 ※ 처리 기간: 320일('14)→ 345일('15)→ 371일('16)→ 328일('17)→ 287일('18)→231일('19) ○ 앞으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